외 교 부
감사관실

공직자 재산등록
주요 실수사례 모음

외 교 부
감사관실

공직윤리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

1. 재산신고 개요 및 작성방법 04

2. 주요 실수 사례

사례 1. 고지거부 허가기간(3년) 종료에 따른 친족 재산 누락 06

사례 2. 친족 소유의 부동산(토지, 건물) 누락 06

사례 3. 금융정보 활용입력 미숙(예금, 유가증권, 채무) 07

사례 4. 부동산 가액 잘못 신고 08

사례 5. 전세(임차)보증금 누락 10

사례 6. 친족 소유의 자동차 누락 10

사례 7. 사인간 채권·채무 누락 11

사례 8. 건물임대채무 누락 11

사례 9.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 12

사례10.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14

사례10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사례9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

사례5 전세(임차)보증금 누락 | 사례6 친족 소유의 자동차 누락 | 사례7 사인간 채권·채무 누락 | 사례8 건물임대채무 누락

사례4 부동산 가액 잘못 신고 / 부동산 평가액 산정방법 / 국세청 기준시가 공시제도

사례1 고지거부 허가기간(3년) 종료에 따른 친족 재산 누락 | 사례2 친족 소유의 부동산(토지, 건물) 누락 | 사례3 금융정보 활용입력 미숙(예금, 유가증권, 채무)

1 재산신고 개요 및 작성방법

1 신고사항

- 등록기준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제외)

2 신고종류

- 【최초 신고】신규, 승진(비공개자→공개자)
- 【변동 신고】정기변동, 의무면제, 퇴직, 재등록, 재공개

3 신고기간

-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임용, 퇴직 등)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변동 신고는 매년 12.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말까지)

4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제출(☞ 온라인 신고)
- **(정기 재산변동신고)** 연도 말(12.31)기준으로 1~2월 신고

5 신고서 작성방법

※ [재산신고]→[신고서 작성] 또는 신고서 작성 버튼 클릭으로 작성 시작

① 본인정보수정: 소속, 직급, 연락처 등 신상정보 수정

② 친족정보수정: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정보 수정

③ 총괄표 작성: 등록기준일 현재, 토지·건물·예금·채권·채무 등 재산신고

④ 변동요약서: 재산증가·감소 등 사유 기재 (최초 재산신고시에는 제외)

⑤ 공개목록작성: 공개대상자인 경우 작성

⑥ 신고서 제출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문의처 **02-2100-8414, 8416**
공직윤리(PETi)시스템 접속 및 시스템 종합 문의 서비스데스크 **1522-4273**

2 주요 실수 사례

사례1 고지거부 허가기간(3년) 종료에 따른 친족 재산 누락

해결 방법 : [친족관리-고지거부신청]에서 고지거부 허가 또는 재심사 신청

□	관계	친족명	주민등록번호	고지거부사유	기타사유
□	부	홍국영	450501-1230001	○ 독립생계유지 ○ 타인부양 ○ 기타	
□	모	강미자	500501-223001	○ 독립생계유지 ○ 타인부양 ○ 기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찾아보기
		찾아보기

⚠ 홍길동은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고 부모 명의 예금, 건물 등 재산 총 ○○억원을 누락하여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요청'** 대상이 됨

부동산정보열람 클릭

사례2 친족 소유의 부동산(토지, 건물) 누락

⇒ 토지정보는 '토지대장', 건물정보는 '지방세 과세정보'(6.1.기준) 이므로 6.1일 이후 변동내역 확인 필요!

해결 방법 : 총괄표작성 화면에서 부동산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및 친족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 후 신고

⚠ 홍길동은 회신된 부동산정보를 열람하지 않고 부모가 신규 취득한 건물 및 토지 ○건, 총 ○○억원의 재산을 누락하여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 대상이 됨

사례3 금융정보 활용입력 미숙(예금, 유가증권, 채무)

⇒ 회신정보는 자동 입력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금융정보 활용입력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해야 함!

금융정보 활용입력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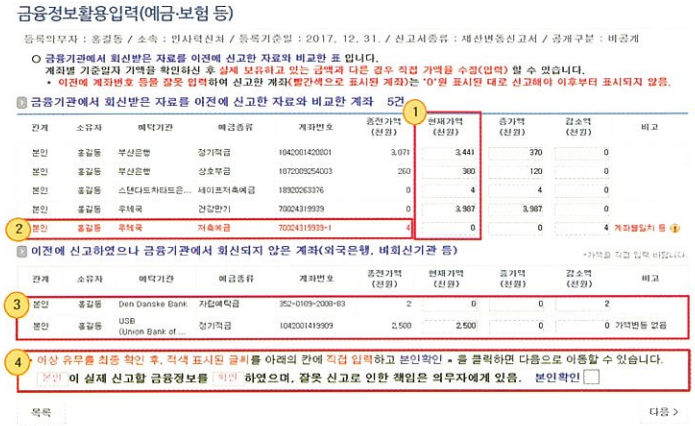

해결 방법 : 총괄표(예금·보험 등, 유가증권, 채무)에서 금융정보 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한 후 금융기관에서 회신 받은 자료와 이전에 신고한 자료를 비교한 표 확인

① '현재가액' 란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이 표시됨

② 붉은색 표시된 계좌는 이전 신고서에서 계좌번호나 금융기관을 잘못 입력한 계좌임

③ 이전에 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계좌(외국은행, 비회신 기관 등)는 '18.12.31일 실제 보유금액을 확인하여 '현재가액' 란에 직접 입력해야 함

④ 금융정보 활용입력 내용의 이상 유무를 최종 확인 후 페이지 하단에 있는 '본인'과 '확인'을 직접 입력하고 본인확인 박스를 클릭해야 신고내용이 저장됨

사례4 부동산 가액 잘못 신고

[신규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신고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 증감을 확인하여 신고

부동산 평가액 산정방법

(토지+건물 일괄공시)
아래 평가액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합산되어 있음

주택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개인주택, 다가구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토지/건물 별도공시)
토지 또는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 아래 평가액으로 산정

유 형	평가액	확인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공시가격 없는 건물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서울 소재- "이택스(ETAX)" 홈페이지 서울 외 소재- "위택스(WETAX)" 홈페이지 ※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국세청 기준시가 공시제도

수도권 및 광역시 중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은 건물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 호 이상인 경우 대지와 건물의 총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고시 중

※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지번 검색]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가격 공시 현황(2018.1.1.기준)>

(단위 :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총 계	18,119	1,116,576	7,614	132,517	7,077	472,949	3,428	511,110	441,453	69,657
수도권	12,581	910,716	4,254	91,209	5,565	388,460	2,762	431,047	370,800	60,247
지방 광역시	5,538	205,860	3,360	41,308	1,512	84,489	666	80,063	70,653	9,410

사례5 전세(임차)보증금 누락

해결 방법 : 총괄표 상 건물 항목에서 전세(임차)권을 선택하여 임차보증금을 신고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에도 건물 항목에서 전세(임차)권으로 보증금을 신고해야함)

★권리종류	전세(임차)권
★소재지	■ 위에 선택한 권리자 주소와 같음 (※정확한 주소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지번 135 - 180 주소찾기 일반 1 - 1 번지

⚠ 홍길동은 본인(또는 자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금 ○억원을 전세권으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여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요청'** 대상이 됨

사례6 친족 소유의 자동차 누락

해결 방법 : **(연도 중 취득한 경우)**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

(계속 보유 중이거나 상속·증여받은 경우)
①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순으로 가액을 신고

재외공관 근무중 소유한 자동차도 등록 대상

사례7 사인 간 채권·채무 누락

해결 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채권 및 채무를 신고하며 신규로 발생한 사인간 채권·채무 등은 채권·채무자 정보, 발생일자,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

⚠ 홍길동은 은행에서 대출 후 후배에게 빌려준 ○억원에 대해 은행 금융채무는 신고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인 간 채권 총 ○억원을 누락하여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요청'** 대상이 됨

사례8 건물임대채무 누락

해결 방법 : 총괄표 상 채무 항목에서 건물임대채무를 선택하여 임대보증금을 신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채무인 점을 명심)

채무자	본인-홍길동 ※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채무종류	건물임대채무
★채무액	40,000 (천원) [사천만]원

⚠ 홍길동은 타인에게 전세를 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건물임대채무) ○억원을 누락하여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요청'** 대상이 됨

사례9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

※ 전체 재산을 이전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 심사 결과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홍길동은 예금누락 등 ○천만원을 잘못 신고하여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이었으나,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여 가중 처분되어 **'징계 의결요청'** 대상이 됨

여기서 잠깐!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누락, 과다 등 재산을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 아래의 조치를 하고 있음

1. 경고 및 시정조치
2.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355호, 2017.3.31.)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 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 고
	3억원 이상	징계(해임)·과태료부과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2017년, 2018년 재산심사 결과 징계 의결 요청 사례

▶ 본인의 전세권 및 배우자 예금 누락

- 재산신고 기준일이 아닌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동안의 재산으로 착각하여 신고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예금, 건물, 건물임대채무, 자동차, 채무 미신고 등

- 재외공관 근무 3년 만료에 따른 재산신고시 금융및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

▶ 직계존속의 고지거부 만료에 따른 재산 누락

- 직계존속의 고지거부가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산 신고시 누락

▶ 최근 두 번의 "경고"로 가중

구 분	가중사항
최초심사자	해당없음
기심사자	•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제출이나 소명지체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 계좌별, 항목별 1천만원 이상 재산을 20건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사례10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① **직위변경 관련** : 기존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더라도 직위가 변경되면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가 새롭게 발생

- 재산공개대상자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던 중 부처 내 다른 직위로 인사발령 되었으나 심사청구 지연
- 재산공개대상자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던 중 공직유관 단체의 장(공개대상자)으로 임명되었으나 심사청구 지연

② **주식 종목 관련** : 비상장 주식,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된 우리사주 등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임

- 3천만원 이하 주식을 보유해 오던 중 배우자가 보유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이 종료되면서 전체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심사 청구 지연

③ **의무이행 기한 관련**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 이행 필요

※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 이행일(1개월)은 재산신고기간과 상이함

- 연도 중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정기재산 변동신고 기간까지만 심사를 청구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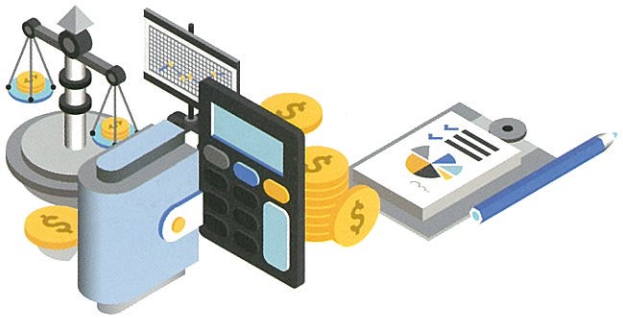

여기서 잠깐!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개요**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심사 청구는 원래 직위 또는 직위변경 후 바뀐 직위에서 가능

- **대상자** : 재산 공개대상자
- **대상주식**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제외: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법 제4조 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법 제12조제4항))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
-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 유의사항

대상자가 비상장 주식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나,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임

-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음' 결정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직위가 변경되었으면 1개월 이내에 다시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를 이행해야 함